
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,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	
사업장 주소	서울특별시 중구		
시설 유형	☐ 식당·카페 해당되는 유형에 체크하세요 v ☐ 유흥·단란		

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전금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